

예 산 총 칙

202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907,137,343	57,214,120
일반회계		1,666,335,980	49,990,079
특별회계		240,801,363	7,224,041
	공기업특별회계	223,410,611	6,702,318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5,332,000	1,959,96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8,078,611	4,742,358
	기타특별회계	17,390,752	521,723
	주택사업특별회계	1,367,474	41,024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620,192	138,606
	농공단지특별회계	8,431	253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5,585	2,56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77,529	44,32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043,029	211,291
	수질개선특별회계	1,022,741	30,682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586,159	17,585
	도시개발특별회계	123,612	3,708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056,000	31,6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6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